

nepes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개정 일자 : 2021.06

	<h1>사 내 규 정</h1>	문서번호	NPS- 07 - 03
		Rev.	2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제정일자	2015.07.01
		개정일자	2021.06.01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목차

제1장 개요.....	4
제2장 내부고발자보호제도	4
별첨1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10조 1항, 3항 관련).....	7
별첨2 『포상 및 징계규정』 징계양정 기준	8
별첨3 포상 및 징계규정 내 금전/안전사고 관련 기준	11

	<h1>사 내 규 정</h1>	문서번호	NPS- 07 - 03
		Rev.	2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제정일자	2015.07.01
		개정일자	2021.06.01

제1장 [개요]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네페스 (이하 '회사') 공동체의 이익을 보전하고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의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 : 회사 구성원 모두를 총칭하며, 임직원은 신고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될 수 있다.
2. 경영진 : 회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하며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임원도 포함한다. 단, 감사가 실질적인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영진으로 본다.
3. 윤리위원회 : 위원장은 CEO며, 위원은 사업총괄 및 전 사업부장/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CEO는 사업총괄에게 위원장을 위임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의 실천 예규 제정 및 윤리규정 위반사항의 조사, 심의 및 징계 결정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4. 비윤리행위 : 신고의 대상이 되는 비윤리행위라 함은 회사의 윤리경영지침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2장 [내부고발보호제도]

제4조 (대상 및 보고의무)

모든 네페스 및 협력업체, 거래업체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조 4항의 비윤리행위를 인지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내부고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네페스 임직원은 내부 비리와 부정 등 비윤리행위를 발견 또는 인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상사는 부하직원의 비리, 부정 행위를 덮을 수 없다.

제5조 (고발자 성실의무)

내부 고발자는 고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6조 (고발 방법)

비윤리행위 고발은 전화, 구두, 서신, 이메일, 웹 페이지, QR코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고발대상과 고발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고발사항의 처리)

	<h1>사 내 규 정</h1>	문서번호	NPS- 07 - 03
		Rev.	2
		제정일자	2015.07.01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개정일자	2021.06.01

1. 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고발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1) 고발의 취지 등 고발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 (2) 고발 내용의 허위 여부 또는 동 규정 제5조의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고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접수된 고발 사항에 대해서 민형사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신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신분 보장)

1. 내부 고발자는 누구든지 이 절차에 의한 고발이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고발자 자신의 귀책사유행위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누구든지 내부 고발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복귀,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내부 고발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윤리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외부관련업체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사실, 정보에 대한 조회, 요구를 할 수 있다.
6. 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 내부 고발자로부터 신고된 내용이 합리적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인사규정, 징계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제9조 (신변보호 등)

윤리위원회는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타인에게 밝히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책임의 감면 및 포상)

1. 내부 고발의 내용이 중대하여 동 고발에 의하여 현저히 회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회사 전체의 이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고발자에게 별첨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동 절차에 따라 내부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상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3. 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함께 고발자에게 보상금 안내를 해 주어야 하며, 내부고발자는 내부 고발로 인하여 직접적인 회사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자기의 직무와 관련한 당연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첨 기준에 따른다.

	<h1>사 내 규 정</h1>	문서번호	NPS- 07 - 03
		Rev.	2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제정일자	2015.07.01
		개정일자	2021.06.01

4. 제3항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은 회사의 수입의 회복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내용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5. 윤리위원회는 동 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논의할 수 있다.
6.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결정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7. 이 규정에 의한 내부 고발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윤리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고발자에 대하여 처벌은 감면할 수 있다.
8. 윤리위원회는 내부 고발에 따라 비윤리행위가 발견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규(취업규칙,윤리규정,포상 및 징계규정 등)'에 따라 처분 하여야 한다.

제11조 (내부고발보호제도의 공시)

내부고발보호제도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고 이를 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에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는 별도의 회의를 통하여 이를 변경하고 CEO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효력의 게시)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14조 (소급효력)

본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동 규정의 개시일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도 신고를 할 수 있다.

	<h1>사 내 규 정</h1>	문서번호	NPS- 07 - 03
		Rev.	2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제정일자	2015.07.01
		개정일자	2021.06.01

#별첨 1 :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10조 1항, 3항 관련)

1. 보상금 지급 기준

- 회사의 재산상의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00만원 이하	30%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3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20%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1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85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
5천만원 초과	585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5%

2. 포상금 지급 기준

- 회사의 재산상의 직접적인 이익이나 손실방지와 연계된 확정된 금액은 없으나 윤리경영 강화에 기여한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상한액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100만원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하거나 기타 윤리경영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경우	50만원

	<h1>사 내 규 정</h1>	문서번호	NPS- 07 - 03
		Rev.	2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제정일자	2015.07.01
		개정일자	2021.06.01

#별첨2 『포상 및 징계규정』 징계양정 기준

1. 비위의 정도 및 과실정도

※ 견책<근신<보직변경<정직<강직<징계해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정도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등급	견책 ~ 근신	근신 ~ 보직변경	보직변경 ~ 정직	정직 ~ 징계해고

2. 비위의 유형

내용
1. 회사의 경영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의무를 위반한 때
3. 회사의 제 규정, 규칙, 지침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
(1) 구매, 회계 등 비용 관련 절차를 위반한 때
① 구매행위를 구매부서의 사전 합의 없이 하거나, 구매부서의 승인 없이 구매한 때
② 회계처리규정에 위반하여 비용을 지급하려 하거나 지급한 때
(2)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인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3) 윤리규정을 위반한 때
(4) 환경안전 규정을 위반한 때
(5) 인장관리 규정, 중요인감 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6) 보안규정을 위반한 때
(7) 기타 회사의 제 규정, 규칙, 지침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
4. 직무 관련 주요 부패/부정행위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 의무를 불이행 하였을 때
5.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거나 회사의 허락 없이 사업의 영위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한 때
(1) 공정한 업무수행에 반하는 알선이나 청탁
(2)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의 부당한 지분을 취득
(3)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하면서 불평등, 부당대우 등을 한 때
6. 회사의 기밀 누설 등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때
(1) 회사의 문서, 장부, 설비 등의 외부 열람
(2) 회사의 정보, 문서, 장부 등의 사외 유출
7. 허위보고 및 이를 위한 문서, 계수를 조작하여 사용한 때
(1) 비위사실의 은폐기도
(2) 문서의 변조 또는 위조 작성
(3) 허위보고
(4) 기타 문서 조작 및 허위 보고
8. 정당한 상사의 직무상 명령 또는 인사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하거나 태만히 한 때
9.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복무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케 한 때
(1) 근무시간 중 수면, 소란 유발 등 기타 업무수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때
(2) 사내에서 음주, 도박행위를 한 때
(3) 회사의 정당한 소지품 검색을 거부한 때
(4) 유언비어 유포 및 중상모략
(5)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한 때
(6) 사내에서 회사 및 타인의 물건 또는 금전을 절취하거나 하려고 한 때

	<h1>사 내 규 정</h1>	문서번호	NPS- 07 - 03
		Rev.	2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제정일자	2015.07.01
		개정일자	2021.06.01

(7) 외주 차량, 타 부서 기계 및 설비의 무단 운전
(8) 회사에서 발행한 제 증명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유용하려 한 때
(9) 잦은 지각 또는 무단 이탈
(10) 흡연 장소 외 흡연 (옥상, 화장실, 출입구 등)
(12) 근태기록의 대리서명 또는 사원카드의 대리 체크, 근태 대장의 허위 작성
(13) 기숙사, 사외제품창고, 기타 회사 소유 공공건물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풍기문란 행위를 하였을 때
(14) 음주로 인해 민/형사상 사고를 유발한 경우 (폭행, 절도 등)
(15) 음주운전을 한 경우
(16) 음주운전으로 인해 민/형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받는 경우 포함)
(17) 기타 근무질서 또는 풍기문란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주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 하였을 때
(1) 5 일 이상 계속 무단 결근 하거나,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주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1 개월에 3 일 이상 결근하거나 지각 3 회 이상일 때
(3) 기타 근태 불량 시

2. 비위의 유형

내용
11. 법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 명예를 실추 시킨 때
12. 고의, 과실로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
(1) 회사 시설, 제품, 부품, 원자재 파손 및 망실
(2) 안전 관리소홀 및 불량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회사 재산에 손실을 야기한 때
(3) 기타 회사에 손해를 야기한 때
13. 채용 시 회사에 제출한 제반 서류상의 성명, 연령, 학력, 경력 기타 중요한 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때
(1) 사(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
(2) 학력 및 경력의 허위 작성 또는 주요 이력사항 누락
(3) 기타 채용 판단에 있어 주요한 사항을 상이하게 작성한 때
14. 불량한 직무수행을 한 때
(1) 제품, 부품 원자재의 무단 사용
(2) 표준위반으로 품질 저하 및 불량 과다
(3) 사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
(4) 제품, 부품, 원자재의 남용
(5) 안전 점검 불이행
(6) 위험 작업의 임의 수행
(7) 직무태만
(8) 화기취급의 소홀
(9) 인화물질, 전기스위치 등 안전설비 무단 취급
(10) 기타 불량한 직무 수행
15. 회사의 허가 없이 인쇄물 또는 전단의 배포, 첨부와 집회, 연설, 시위, 선동 등의 행위를 한 때
16.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상행위를 한 때
17. 고의적으로 업무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회사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1) 태업
(2) 근무장소 이탈

	<h1>사 내 규 정</h1>	문서번호	NPS- 07 - 03
		Rev.	2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제정일자	2015.07.01
		개정일자	2021.06.01

(3) 타실 또는 탈의실, 출입 금지구역의 무단 출입
(4) 타인의 업무 방해
(5)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때
18.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훈련을 기피하거나 태만히 한 때
(1) 교육훈련의 무단 불참
(2) 교육훈련장 무단 이탈
(3) 교육훈련 기간 중 음주, 도박 행위를 한 때
(4) 교육훈련을 기피하거나 교육진행을 방해한 때
(5) 기타 교육훈련을 태만히 한 때
19.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때
(1) 회사 공금의 사적 유용
(2) 회사 경비의 부당한 사용
20.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
21. 회사가 정한 제반 제도 및 규정을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한 때
(1)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차별대우 한때
22. 뇌물을 약속,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때
(1) 의례적인 금품 향응 수수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한 행동을 한 경우
23.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때
24. 기타 이상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위 표에 없는 비위유형에 대한 양정기준은 유사한 비위유형의 기준에 의한다.

	<h1>사 내 규 정</h1>	문서번호	NPS- 07 - 03
		Rev.	2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제정일자	2015.07.01
		개정일자	2021.06.01

#별첨3 포상 및 징계규정 내 금전/안전사고 관련 기준

1. 금전 관련 기준

기준 금액 및 항목	징계등급
금품수수, 공금횡령, 절도 등	견책 ~ 징계해고

※ 상황 및 의도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음

2. 안전사고 관련 기준

- 가스·화학약품·폐기물 유출 및 화재, 폭발, 붕괴, 누수, 파손 등 과실로 인해 회사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를 말함

구분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경과실인 경우	견책 ~ 정직	정직 ~ 강직
중과실인 경우	보직변경 ~ 강직	강직 ~ 징계해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	